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및 관련 세법 규정의 문제점

신 현 결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E-mail : shgcpa@catholic.ac.kr

1999년에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합병거래의 현황을 연구하거나, 동 준칙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법인세법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합병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9건의 합병거래 중 67건의 합병거래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건의 합병거래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이 11건이었다. 매수법 합병시 36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고 18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합병관련 주식공시사항 중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공시가 대체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부의영업권 환입, 기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을 매수원가에 포함시킬 때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평가, 인수합병관련 충당부채의 후속적 식별의 경우 다른 자산·부채와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적용, 지분통합법 적용의 비실효성, 그리고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의 재고 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문제점, 세법상 시가의 불명확, 그리고 합병평가차익의 무상주 배당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색인어> 합병, 매수법, 지분통합법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합병회계준칙」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통일적이고 체계적

인 합병회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합병회계기준은 회계이론보다는 상법이론을 반영한데다가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이광재(1998), 박성배 외(1999))되어, 1999년 3월에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인수합병준칙이라 함)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1999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은 국제회계기준 제22호(IAS 22)의 규정을 거의 대부분 답습하면서 미국의 APB Opinion No.16의 규정도 일부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인수합병준칙의 개정을 통해서 개정전 기준에서 지적되었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시정되었으며, 합병의 본질을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을 도입하였다.

미국에서는 APB Opinion No.1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통합법에 문제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다가 결국 2001년에 지분통합법을 폐지하는 합병관련 회계기준이 개정되면서 FASB Statement No.141이 공표되었다. 또한 기업의 자산 중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무형자산을 대폭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1999년에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이 개정된 후 합병과 관련된 기업환경이 변화되었고 미국 회계기준도 이미 개정된 상황에서 현행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에서 노출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수합병준칙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인수합병준칙의 규정과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합병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합병현황 및 회계처리방법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합병관련 우리나라 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을 비교하고, IV장에서는 우리나라 합병관련 회계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V장에서는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간의 불일치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 VI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최근 우리나라의 합병 현황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합병회사가 거래소 상장회사인 경우와 코스닥 등록기업인 경우의 합병현황은 아래의 <표 1> 과 같다. 합병거래에 대한 현황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합병종료보고서에서 발췌하였으며,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 인

식금액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주식에서 발취하였다.

〈표 1〉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구분		영업권 인식		부의영업권 인식		(부의)영업권 무인식
		건수	총액	건수	총액	건수
2001	거래소	6 (2)	54,239	4 (0)	8,908	2 (0)
	코스닥	8 (0)	41,222	3 (0)	4,568	2 (1)
2002	거래소	5 (0)	232,044	2 (0)	175,242	4 (2)
	코스닥	7 (0)	110,213	1 (0)	392	3 (1)
2003	거래소	3 (0)	50,973	4 (1)	7,059	6 (6)
	코스닥	7 (2)	68,769	1 (1)	290	1 (1)
합계	거래소	14 (2)	337,256	10 (1)	191,209	12 (8)
	코스닥	22 (2)	220,204	5 (1)	5,250	6 (3)

※ 1. 건수에서 괄호 내의 수치는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 건수임.
 2. 2001년 거래소 합병건수 중 1개는 두 회사를 합병하면서 각각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발생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3년간 합병건수는 2001년에 25건, 2002년에 22건 및 2003년에 22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합병회사가 거래소 상장기업인 경우와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가 매년 비슷한 추세이다. 합병회사가 거래소 상장기업인 경우 3년간 합병과정에서 총 14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고 10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2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반면에 합병회사가 코스닥 등록기업인 경우 3년간 합병과정에서 총 22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고 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6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체로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에 비해 부의영업권을 인식하거나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합병준칙에 따르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은 합병사례 중 거래소 상장기업에서는 8건, 코스닥 등록기업에서는 3건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총 69건의 합병 중 67건의 합병을 매수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으며, 2002년과 2003년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각각 1건씩의 합병거래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매수법 합병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코스닥 등록기업 중 2001년에 1건과 2002년에 2건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관련 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부실 기재하여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의 현황 요약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의영업권이 발생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부의영업권 환입방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병관련 재무제표 주석이 대체로 충분하지 않게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관련 주석공시사항을 검토하던 중 몇 가지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도 발견되었다. 2002년도 거래소 상장기업 합병 중 1건에서 매수법으로 합병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석에 기재하면서 동시에 피합병회사의 감가상각방법이 합병회사의 회계처리와 상이하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후 장부가액으로 합병회계처리를 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이 있었다. 매수법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합병기업간의 회계처리 상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수합병준칙의 위배로 판단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3년도 코스닥 등록기업 합병 중 1건의 주석에서 피합병회사가 종속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매수법 회계처리를 공시하였는데, 이 사례도 또한 인수합병준칙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다.

III. 합병관련 회계기준의 비교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 제12호(IAS 22)¹⁾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과 미국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미국의 합병거래는 APB Opinion No.16²⁾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2001년에 FASB Statement No.141³⁾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FASB Statement No.141과 APB Opinion No.16간의 주요 차이점은 FASB Statement No.141에서는 개정전까지 허용하였던 지분통합법(pooling of interest method)을 폐지하고 매수법(purchase method)만 허용하고 있으며, 법적인 계약이 있고 분리가능하다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피매수회사의 무형자산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업결합의 주요 이유

1) IAS 22. 1998. Business Combinations.

2) APB Opinion No.16. 1970. Business Combinations.

3) FASB Statement No.141. 2001. Business Combinations.

및 매수원가를 매수대상 자산 및 부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합병의 회계처리방법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에서는 합병거래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하여 3가지의 지분통합 기업결합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APB Opinion No.16에서는 매수법뿐만 아니라 지분통합법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FASB Statement No.141에서는 매수법만 허용하고 있다. 합병거래는 일반적인 교환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환가격에 기초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논리에 따라 매수법만 적용하여 합병거래를 회계처리함으로써 피매수회사의 총취득가격에 대한 정보 및 매수 이후 성과평가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통합법이 폐지된 것이다.

2. 매수원가의 측정

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자산을 집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및 기업결합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회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매수합병 과정에서 매수회사가 지불한 현금 및 기타 자산의 공정가액, 매수회사가 부담한 부채의 공정가액, 그리고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액이 매수원가가 되며, 이는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과 미국회계기준이 모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에서 지분통합법으로 합병거래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주식의 가액과 피합병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합병교부주식의 액면총액과 피합병회사 자본금의 차이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업결합 관련 비용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기업결합 직접비용은 매수원가에 포함하며, 주식발행비용은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간접비용 및 일반관리비용은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에 따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모든 합

병관련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4. 매수원가의 배분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매수회사는 매수일 현재 취득한 자산 및 승계한 부채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매수원가를 배분하여야 한다. 매수회사는 매수원가를 배분하기 전에 현금을 제외한 매수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무형자산을 포함하여 취득한 자산 및 승계한 부채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에 따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수원가의 배분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5. 취득한 자산 및 승계한 부채

매수과정에서 취득한 피매수회사의 자산 및 승계한 부채의 공정가액은 우리나라 합병준칙의 규정과 미국회계기준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인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이 계약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당해 무형자산의 양도가능 및 분리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이 계약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당해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한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다. 이때 무형자산이 개별적으로 양도될 수 없더라도 다른 관련 자산과 결합하여 양도될 수 있다면 분리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모든 연구개발비(R&D expenditure)를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매수회사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면 피매수회사 재무제표에는 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자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러나 매수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피매수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매수회사가 당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즉, 미국회계기준은 연구개발비를 비롯하여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요건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에 따라 지분통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을 승계하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6. 영업권

매수법으로 합병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매수원가가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영업권(goodwill)으로 인식한다. 이후 영업권의 회계처리하는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과 미국회계기준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에서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영업권을 상각하되, 매결산일에 영업권을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 감액손실 인식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액손실을 인식한 영업권은 추후 감액손실환입을 인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합병회계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FASB Statement No.142⁴⁾에 따라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FASB Statement No.142는 종전의 APB Opinion No.17⁵⁾을 대체하는 회계기준으로서 FASB Statement No.141이 개정될 때 함께 개정되었다. FASB Statement No.142의 주요 내용은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유한한 상각자산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영업권은 무한한 내용연수를 갖는 자산으로 간주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상각하지 않는 대신 FASB Statement No.144⁶⁾에 따라 감액손실 인식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부의영업권

매수법으로 합병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이 매수원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이 부의영업권(negative goodwill)이다. 부의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하는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과 미국회계기준이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에서는 부의영업권이 매수계약서에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무관한 부의영업권(이를 인수합병준칙에서는 기타 부의영업권이라고 함) 중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회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당해 비회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

4) FASB Statement No.142. 2001, Goodwill and Other Intangible Assets.

5) APB Opinion No.17. 1970. Intangible Assets.

6) FASB Statement No.144. 2001, Accounting for the Impairment or Disposal of Long-Lived Assets.

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며,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한다.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부의영업권을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즉, 부의영업권과 당해 자산의 인식금액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배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제외한 금융상품,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연금 관련 선급비용 및 기타 유동자산 등이다. 만일 부의영업권을 취득한 자산에 배분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특별이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부의영업권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될 여지가 없으므로 "negative goodwill"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영업권 뿐만 아니라 부의영업권도 계상되지 않는다.

IV.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타 부의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부의영업권으로 계상한다. 그런데 인수합병준칙(문단 10. 나)에서는 부의영업권을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으로서 그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경우

② 기타 부의영업권

기타 부의영업권은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한 경우에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의영업권을 ① 또는 ②와 관련된 부의영업권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부의영업권의 환입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일단 아래에서는 ②와 관련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①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그 다음에 언급하기로 한다.

②와 관련된 부의영업권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문단 10. 라)하고 있다.

부의영업권의 구분	회 계 처 리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 이하의 부의영업권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의영업권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일시환입)

전술한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부의영업권을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차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에서는 재고자산이나 토지 등 비감가상각자산을 포함하여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비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부의영업권은 당해 비감가상각자산이 매각처분되는 시점에서 환입하고,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부의영업권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환입하는 복잡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⁷⁾하고 있다.

미국회계기준의 논리는 매수합병거래가 일반적인 자산의 교환거래인데, 부의영업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애초부터 피매수회사의 자산이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피매수회사 자산 중 비화폐성자산의 과대평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의영업권 발생금액을 당해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은 미래에 비화폐성자산이 실현되거나 상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상쇄되도록 부의영업권 환입기간을 대응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의 규정은 일단 실무에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첫째, 재고자산, 토지 등과 같은 비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부의영업권은 일단 이연시킨 뒤 당해 자산이 매각처분되는 회계연도에 매각처분되는 부분만큼 환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매수일 이후 당해 자산이 매각처분되는 시점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미국회계기준처럼 매수일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부의영업권 안분액 만큼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면 이후 당해 자산이 매각처분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매출원가나 처분손익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매수일 이후 일일이 당해 자산의 처분 여부를 파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상각가능자산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은 매수일 현재 당해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

7) 한국회계연구원,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1-11.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의 논리는 상각가능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인식되는 기간에 대응하여 부의영업권을 환입함으로써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려는데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상각가능자산이 중도에 매각처분되지 않고 내용연수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당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중도에 특정 자산이 일부 또는 전부가 매각처분 된다면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그 이후연도에는 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영업권환입은 처음에 추정된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계속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감가상각자산은 정액법 이외의 다른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상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영업권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환입함으로써 감가상각비와 부의영업권환입이 적정하게 대응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미국회계기준처럼 매수일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부의영업권 해당액만큼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매우 간편하게 부의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논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래 발생손실 관련 부의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부의영업권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매수회사 입장에서 피매수회사를 인수합병한 후에도 상당기간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수원가를 하향조정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부의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부의영업권을 미래의 발생손실과 관련짓기 위해서는 당해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미래 발생손실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하되 다만, 당해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술한 기타 부의영업권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문단 10. 다)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에도 문제점이 있다.

매수계약서에 명시된 손실발생기간이 경과한 시점은 매수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시점 현재 전술한 기타 부의영업권은 특정 방법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정액법으로 환입하거나 일시에 환입처리한 후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매수계약서에 명시된 손실발생 예상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어떻게 이와 관련된 부의영업권을 기타 부의영업권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굳이 인수합병준칙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한다면 매수시점으로 소급하여 회계처리를 해

야 하는데, 미래 손실관련 부의영업권에 대해서 매수일 이후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지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수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시점으로 소급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준칙에서 기타 부의영업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래 손실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은 매수계약서에 명시한 손실발생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일시에 환입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동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피매수회사 주식을 취득한 상태에서의 매수원가

매수일 전에 피매수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피매수회사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매수합병을 하는 경우 매수원가는 매수일 직전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동 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수회사가 이미 피매수회사의 주주인 상태에서 매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회사는 자기를 제외한 다른 주주에게만 합병신주를 교부할 수도 있고 자기를 포함한 피매수회사 주주 모두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매수일 이전에 매수회사가 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의 가액을 매수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때 피매수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매수원가로 하는 방법과 공정가액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더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준칙(문단 6)에서는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을 매수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매수합병은 공정가액에 기초한 교환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피매수회사 주주에게 이전되는 매수원가는 공정가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매수회사가 이전에 취득했던 피매수회사주식이 매수원가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매수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 128)와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17호(연결재무제표, 문단 339)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8)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취득대가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의 직전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액과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이다.

9) 지배회사가 지배할 수 있게 된 날 전에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액 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추가 취득

두고 있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지지할 수 있다.

4. 자산·부채의 후속적 식별

매수일 이후에 식별가능한 자산·부채가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 인식시점에서 자산·부채로 계상하되,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계상하거나 기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을 조정하고,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말 후에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계상하거나 기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 또는 손실로 인식한다. 즉, 후속적 식별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영업권(부의영업권) 금액을 수정하거나 식별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하여 계상한 총당금은 수정시점에 관계없이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조정하도록 규정(문단 13, 라)하고 있다. 합병준칙(문단 7)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래의 발생 비용에 대해서 총당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총당금도 식별가능 자산 및 부채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식하는 총당금이 식별가능부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부채의 후속적 식별이나 가치 변화에 대해서는 인식시점에 따라 영업권(부의영업권) 금액을 수정하거나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데 반해 미래 발생 비용에 대한 총당금의 수정은 그 시점과 관계없이 영업권(부의영업권) 금액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만 규정한 것은 일관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회계처리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미래 발생 비용에 대한 총당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지분통합법의 폐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회계기준은 최근에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을 모두 규정하고 있던 APB Opinion No.16이 폐지되고 매수법만 허용하는 FASB Statement No.141로 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매수법과 지분통합법간의 상이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매수법 및 지분통합법을 적용한 재무제표의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을 투자계정 금액으로 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동 기준서의 개정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통합법을 적용하면 이미 피합병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무형자산만 합병회사가 인식하는 반면, 매수법을 적용하면 식별가능한 모든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법을 적용한 회계정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분통합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은 APB Opinion No.16 및 IAS 22의 영향을 받아 매수법 및 지분통합법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지분통합법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에서 발생한 69건의 합병거래 중 67건이 매수합병이고, 2건만 지분통합 합병이었다.

인수합병준칙에서는 합병거래를 지분통합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문단 5)하고 있다.

- ① 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
- ② 결합참여회사간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 ③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

위의 3가지 조건 중 첫째 요건은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질 때 합병대가로 현금 등의 자산을 이전하기 보다는 합병신주를 교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합병이 이루어질 때 합병회사의 규모가 피합병회사 보다 클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또한 동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중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셋째 조건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병전과 합병후 각 회사의 주주들의 상대적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비율이 1대 1로 이루어지면서 피합병회사 보통주식의 100%가 합병회사 신주로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분통합법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도 지분통합법의 문제점이 깊이 있게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도 지분통합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

우리나라 합병준칙(문단 17) 및 미국회계기준 모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에서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며, 지배·종속 관계 성립일 이후의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의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이와 같은 논리는 100% 지배·종속 관계의 연결대상 회사간의 합병의 경우에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연결재무제표는 100%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단일실체를 가정하여 작성하는 가상의 재무제표이다. 그러나 합병은 실제로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자산이나 주식을 교부하고 이루어지는 교환거래이다. 예를 들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어도 지배회사는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40% 지분 소유자에 대해서 적절한 합병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거래가 있는 경우와 단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모두 최종 기업결합 후의 재무제표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논리적일 수도 있다.

또한 특정 회계연도 중에 100% 미만의 지배권을 획득한 후 동 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합병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동일 연도에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합병거래가 발생한다면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이 없기 때문에 인수합병준칙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와 합병거래를 동일한 기업결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수합병준칙(문단 17)의 규정이 타당할 수 있으나, 합병거래는 실제로 발생한 거래인 반면 연결은 가상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배회사의 지분율에 관계 없이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합병거래를 회계처리하는 규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V. 법인세법상 합병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의 요약

합병거래가 발생할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피합병법인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피합

법법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그리고 합병법인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합병거래에 대한 이러한 과세체계는 피합병법인이서 과세되지 않은 축적된 미실현이익이 합병을 통해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이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지 않다면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합병시점에서 즉시 관련 조세를 부담시키지 않고 미래로 이연시킬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제44조 제1항)에서는 합병에 대한 과세이연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95% 이상일 것.
-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각 항목별로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법인세 과세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은 합병대가(합병교부주식의 가액 및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청산소득 계산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이연요건(사업의 계속성 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이 합병교부주식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하면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이서 과세되지 않은 청산소득은 결국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2)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합병차익은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합병대가(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법인세법에서는 합병차익이 합병평가차익¹⁰⁾, 합병감자차익¹¹⁾,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및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합병평

10)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승계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시가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1)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서 합병대가(액면가액)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차익을 익금항목으로 과세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과세이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 중 토지와 건축물의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당시 법인세 부담을 처분 또는 감가상각시점까지 이연시킬 수 있다.

한편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병교부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소득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에 각각 가산한다. 이렇게 하면 피합병법인에서 과세된 청산소득금액만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감소시키게 되어 결국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합계액은 일치하게 된다. 즉,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게 청산소득이 과세되지 않으나, 과세되지 않은 청산소득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결과가 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중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은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3)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수령한 합병대가가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때 합병대가 중 합병교부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이연요건(사업의 계속성 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소득은 결국 나중에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되므로 과세이연에 불과하다.

(4)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에 대한 자본전입

합병법인이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가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된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무상주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합병당시 과세된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또한 합병당시 합병교부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 이외에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과세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합병차익의 무상주에 대해서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2.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술한 합병과 관련된 법인세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관련 세부담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세시점을 합병 시점에서 미래로 이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세부담액의 과세이연 기간에 대한 이자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세혜택을 받게 된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합병관련 과세이연요건은 인수합병준칙에서 지분통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요건과 차이점이 있다. 인수합병준칙에서는 지분의 연속성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목적 및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인수합병준칙과 법인세법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1)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인수합병준칙의 규정상 지분통합법으로 구분되는 경우라면 대체로 법인세법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지분통합법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합병의 경우에도 종속회사의 장부가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매수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합병이 아니면서 매수법을 적용한 합병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인수합병준칙에서는 매수법을 적용할 경우 피합병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모든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토지와 건축물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투자자산 및 유·무형자산에 대해서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비화폐성자산에 대해서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병기업에게 얼마나 세부담이 완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인수합병준칙에서는 부채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채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이 다를 경우 이 부분도 합병평가차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합병차익의 범위 내에서 합병평가차익 등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합병평가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회

사의 장부가액(단,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의미한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합병평가차익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런데 평가하여 승계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즉 합병평가차익에 영업권을 포함시켜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에 포함시켜 과세하자는 견해와 과세불가의 견해가 있다.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에 포함시켜 과세하자는 견해는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계속 영업기간동안 축적된 초과수익능력(사업상 가치가 있고)이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 되지는 않았지만 합병당사법인의 협상에 따라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였을 것(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이고, 합병법인에게로 양도되는 자산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권의 양도차익은 합병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상기에서 언급된 영업권은 세무상 영업권을 의미하므로, 회계상 영업권 중 사업상 가치가 없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248, 2002. 2. 14>. 또한 합병시점에서 영업권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합병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은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순금화 됨에 따라 이중으로 조세혜택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살펴보면, 영업권은 전술한 바와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합병이라는 거래가 있기 이전에는 영업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합병이라는 경제적거래를 통해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합병법인에게로 승계되면서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되고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창설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현행 법률에서는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과세여부 및 그 과세요건과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 더불어 법 제44조의 입법취지가 상법상 계속기업과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합병시점에서 영업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준칙(문단 8)에서는 명시적으로 피매수회사의 무형자산 중 영업권은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평가차익 중 영업권 해당액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공정가액과 시가의 불일치

합병관련 법인세법에서의 핵심적인 규정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법인세법에서는 승계한 자산의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합병평가차익이라고 규정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수합병준칙에서는 매수법으로 합병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시가에 대한 규정이 인수합병준칙에서의 공정가액 규정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법인세법에서의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¹²⁾ 따라서 합병과 관련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가 인수합병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가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합병평가차익의 무상주 배당

합병회사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인수합병준칙에서는 매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이 매수원가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회사의 장부에는 합병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이 계상되는 대신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영업권(또는 부의영업권)이 계상될 뿐이다. 이 경우 합병회사가 자본전입할 수 있는 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뿐이며, 주식발행초과금이 합병평가차익 해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모두 자본전입되더라도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상법상 합병차익과 기업회계상 부의영업권이 전혀 관련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될 것이다.

12)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합병현황을 파악하고 인수합병준칙 및 관련 법인세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에서 발생한 69건의 합병 중 2건만 지분통합법 합병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매수법 합병이었다. 매수법 합병시 36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다.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에서는 매수법 합병이더라도 피매수회사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은 사례가 11건이었다.

합병관련 주식공시사항을 검토하던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부의영업권이 발생한 합병의 경우 대체로 환입방법에 대한 주석을 불충분하게 공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2건의 합병거래에 있어서는 인수합병준칙을 위배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 부의영업권에 대한 환입방법이 매우 복잡해다가 부의영업권을 직접 비화폐성자산에서 차감하는 미국 회계기준과 달리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화폐성자산의 처분시 환입금액과 관련자산의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미래 손실관련 부의영업권을 손실발생기간 경과시점에 기타 부의영업권에 편입하여 회계처리하게 되면 추정의 변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급법으로 회계처리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피매수회사 주식을 이미 취득한 후에 매수합병이 이루어질 때 피매수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매수원가로 하기 때문에 매수원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는 기본원칙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인수합병 과정에서 설정한 충당부채에 대한 후속적 식별에 대한 회계처리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후속적 식별에 대한 회계처리와 달라야 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회계처리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에서는 이미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이를 폐지한 바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인수합병준칙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지분통합법 회계처리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100% 지배·종속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은 교환거래라는 합병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에 국한하고 있는데, 인수합병준칙에서는 대부분의 비화폐

성자산에서 평가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세이연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법에서의 시가가 인수합병준칙에서의 공정가액과 동일한 개념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무상주 배당시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데, 사실 인수합병준칙에서는 합병차익이 계상될 여지가 없으며, 주식발행초과금이 합병평가차익 해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모두 자본전입되더라도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병관련 회계기준 및 세법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지분통합법 회계처리가 미국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례가 많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지 지적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향후 합병과 관련된 회계기준과 세법 등 관련 규정이 좀더 논리적이고 적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개정될 수 있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김주택, 1999, "기업합병회계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제12권, 139-159.
- 박성배 · 윤태화 · 오문석, 1999, "합병회계준칙 및 합병과세제도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세무학연구, 제13호, 347-371.
- 삼일인포마인, 2004, 조세법전.
- 이광재, 1998, "합병회계준칙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7권 제2호, 177-205.
- 이우택, 1993, "합병본질론과 합병회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4호, 131-150.
- 증권선물위원회, 1999, 기업인수 ·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국외 문헌>

- APB, 1970, APB Opinion No.16, Business Combinations, AICPA.
- APB, 1970, APB Opinion No.17, Intangible Assets, AICPA.
- FASB, 2001, SFAS No.141, Business Combinations.
- FASB, 2001, SFAS No.142, Goodwill and Other Intangible Assets.
- IAS, 1998, IAS 22, Business Combinations.

Study on the Problems of Korean GAAP and Tax Regulations on the Merge Transactions

Hyun-Geol Shin

Abstract

Since revision of Korean GAAP on the merge transaction in 1999, the few studies on the problems of the GAAP or on the inconsistency of GAAP and regarding tax regulations have been perform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e of the merge transactions, to find out the problems on the regarding GAAP and tax regulations, and to suggest the method to improve them.

Among the 69 merge transactions of the listed and registered companies for the recent 3 years, 67 merge transactions are reported as the purchase transactions and 2 transactions as the pooling of interest. And 11 transactions occurred between parents and subsidiaries. I investigate the sufficiency of the foot disclosures on the merge transactions, I find out that the disclosure on the amortization of the negative goodwill are not sufficient, and several transactions are not recorded in conformity with GAAP.

This paper indicates the problems on the GAAP as follows: the complicated and irrational method of amortization of the negative goodwill, the valuation of the stocks acquired before the merge, the inconsistent adjustments to purchase consideration contingent on future events, and the valuation of the merge between the parents and subsidiaries. And the problems on the tax regulations are as follows: tax deferment of the income from merge valuation, the ambiguous definitions of the fair value, and stock dividend of the income from merge valuation.

<Key words> merge, purchase method, pooling of interest method